

	원격수업 운영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9. 05. 31.
		최종개정일자	2022. 10. 17.
		담당부서	교육혁신처 원격수업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방송·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격병행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원격병행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점인정) 제2조에서 정한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학점당 이수시간)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원격수업의 개설) 학기별 원격수업 교과목은 계열 및 전공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1. 02.01.>

제6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출석관리) ①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접속시간 등을 포함한다)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출결처리하는 학사운영플랫폼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8조(운영 방법) ①원격수업의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교 및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이루어진 국내·외 대학의 원격강의시스템
 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3. 외부 수주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 공급계약
- ②원격수업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 등에서는 학칙 제49조에 따라 교육과정, 수업진행 방법 등 **교육혁신처**에서 요구하는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0.17.>
- ③공급계약을 맺은 콘텐츠 중 학교 본부에서 개설한 과목의 학점부여는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무입학처장**의 명으로 부여한다.<개정 2022.10.17.>

제9조(원격수업 개설 및 절차) ① 각 학과장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에 의거 학기별 개설과목 제출 시 원격교육 형태로 운영할 강좌를 표시하고, 원격교육과정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 및 담당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격교육 형태 여부를 병기하여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과목 특성상 원격교육 운영이 어려운 강좌의 경우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원격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은 강의실(면대면)에서 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출석은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2/3이상 참여 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과에서 개설 되지 않은 과목이나 학교 교육목표 달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본부에서 원격수업을 개설 할 수 있다.

⑤ 원격 수업 또는 블랜디드 수업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은 강의 계획서 및 주차별 강의계획서에 원격 및 블랜디드 수업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제10조(원격수업의 운영) ①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정규학기 및 계절 학기에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대면수업의 일반 교과목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한다.<개정 2021. 02.01.>

② 원격수업 1차시는 대면수업 1시수와 동일하며 1차시에는 콘텐츠 진행시간은 25분 이상이며 온라인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총 학습시간을 50분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02.01.>

③ 온라인 학습활동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퀴즈, 토론, 과제 등으로 되며 각 활동별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02.01.><개정 2022. 10.17>

- 1) 퀴즈 : 1개당 5분 인정
- 2) 토론 : 1차시 당 25분 인정
- 3) 과제 : 1차시 당 서술형 25분 인정

제11조(평가방법) 원격수업의 평가방법 중 시험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평가 방법은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 02.01.>

제12조(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일반 교과목 수강신청 기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강신청) 본 대학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수강자격) 해당학기 재학생에 한한다.

제15조(원격수업 관리 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총 9인 이상으로 하고 6인 이내의 전임교원과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으로 학생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혁신처장, 교무입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며, 위원장은 원격수업지원센터장이 된다.<개정 2021. 02.01.><개정 2022. 10.17>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온라인 활용 수업) 이러닝 과목 외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보조형 학습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블렌디드러닝’은 총 수업시간 중 온라인 수업 비중이 70% 미만인 과목으로 온라인 수업과 출석수업, 그리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하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출석관리 및 성적평가가 이뤄지는 수업을 의미한다.

②‘플립 러닝’은 수업 전에 온라인 수업자료를 제공하여 선행 학습 후 강의시간에 학습자 중심활동으로 토론이나 과제 풀이 등을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의미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격수업과정 개설 신청서

과목정보	개설학과		학년	
	과목명		학점(시수)	()
	이수구분	전필() 전선() 교필() 교선() 기타()		
	유형	이러닝()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보조형 학습()		
	온라인강의시수	온라인시수()/전체시수()		
신청사유 및 운영계획				
콘텐츠 유형	*음성 및 동영상 강의기반, 플래쉬 등 유형 작성			
상기와 같이 원격수업과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목포과학대학교총장귀하				